

『혁신성장펀드』 (성장지원펀드) 2023년 2차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(재)공고

혁신성장펀드(성장지원펀드) 2023년 2차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선정 개요

| 항 목 | 세부내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|-------|----------|
| 출자자별 위탁운용 금 액 | <p>○ 정책출자자 위탁운용금액 : 총 800억원 이내 (단위: 억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정책출자자</th> <th rowspan="2">합 계</th> </tr> <tr> <th>정부재정(재정모펀드)</th> <th>한국산업은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700</td> <td>100</td> <td>80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* 출자자별 위탁운용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, 위탁운용사 선정 이후 출자자별 승인 절차 진행함</p> | 정책출자자 | | 합 계 | 정부재정(재정모펀드) | 한국산업은행 | 700 | 100 | 800 | | | | | | | | | | | |
| 정책출자자 | | 합 계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정부재정(재정모펀드) | 한국산업은행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700 | 100 | 80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분 야 별 출자계획 | <p>○ 출자계획 (기업투자 블라인드펀드) (단위: 개, 억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지원 분야</th> <th colspan="3">정책출자자</th> <th rowspan="2">펀드별 목표결성금액</th> <th rowspan="2">선정 운용사수</th> <th rowspan="2">조성 목표</th> <th rowspan="2">주관 기관</th> </tr> <tr> <th>재정</th> <th>산은</th> <th>출자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성장지원 매칭</td> <td>700</td> <td>100</td> <td>16.0%</td> <td>2,500</td> <td>2</td> <td>5,000</td> <td>신한 자산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성장지원펀드와 혁신산업펀드 간 중복지원은 허용하지 않음</p> <p>○ 소정의 심사결과 및 위탁운용금액 조정 등에 따라 정책출자자 출자금액, 비율 및 선정 운용사 수 등은 변경될 수 있음</p> | 지원 분야 | 정책출자자 | | | 펀드별 목표결성금액 | 선정 운용사수 | 조성 목표 | 주관 기관 | 재정 | 산은 | 출자비율 | 성장지원 매칭 | 700 | 100 | 16.0% | 2,500 | 2 | 5,000 | 신한 자산 |
| 지원 분야 | 정책출자자 | | | 펀드별 목표결성금액 | 선정 운용사수 | | | | | 조성 목표 | 주관 기관 | | | | | | | | | |
| | 재정 | 산은 | 출자비율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성장지원 매칭 | 700 | 100 | 16.0% | 2,500 | 2 | 5,000 | 신한 자산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운 용 사 선정방법 | <p>○ 홈페이지* 공개모집 공고 등을 통해 주관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</p> <p>- 운용사, 운용인력, 펀드운용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</p> <p>* 신한자산운용: www.shinhanfund.com, 한국산업은행: www.kdb.co.kr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접수일시 | <p>○ 2023년 10월 23일(월) 10:00 ~ 15:00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접수방법 | <p>○ 주관기관이 정하는 제출서류*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시한 내 제출(접수처 및 문의방법 참고)</p> <p>* 제출서류 및 관련 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</p> <p>○ 접수시한 내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, 접수 후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은 제안사항 변경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허용하지 않음</p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가. 기본항목

| 항 목 | 세부내용 |
|---------------|---|
| 출자대상 투자기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에 의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* * 경영참여 목적에 한함 ○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에 의한 창업·벤처전문 기관전용사모 집합투자기구 ○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○ 「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」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<p>※ 선정된 위탁운용사는 관련 법규의 신설·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투자기구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운용 자격을 갖추고 있고 본건 펀드의 운용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간 협의를 통하여 펀드 결성 전까지 변경 가능</p> |
| 심사결과 발 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3년 11월 중* * 일정은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선정 이후 정책출자자별 내부 승인절차 완료 후 출자확정 |
| 펀 드 결성시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3년 12월말 * 연내 결성 조건, Multi Closing은 '24.3월말 이내로 1회에 한하여 허용하되, 출자자간 협의시 변경 가능 |
| 운 용 사 신청자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서 접수일 현재 타 출자자 출자확약(LOC) 750억원 이상 보유 ○ 제안서 접수일 현재 「출자대상 투자기구」의 관련 법규에 따른 펀드 결성과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국내에 설립된 법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안운용사가 외국법인일 경우, 국내법 적용 등의 제한이 없도록 제안서 접수일 이전까지 국내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함(사전협의 요망) ○ 제안 운용사에서 운용중인 기존 펀드 정관(규약)에 유사한 목적을 가지거나 경합 소지가 있는 펀드 설립을 금지하는 경우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 요망 ○ 제안 운용사가 유한회사이고 동사의 출자자들이 유한회사 형태로 기존 펀드를 운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,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 펀드 운용사와 제안 운용사의 최대 출자자가 동일하거나 기존 펀드 운용사에 참여한 개인 출자자중 2/3 이상이 제안 운용사의 출자자로 참여하면, 기존펀드 운용 실적을 본건 제안 운용사 실적으로 인정하여 평가 - 단, 신설되는 유한회사가 제안 운용사로 참여할 경우, 법인 설립은 접수일자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○ 공동운용(Co-GP) 제안은 허용하지 않음 |

나. 주요 출자조건

| 항 목 | 세부내용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|
| 주 목 적 투자비율 |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장지원 매칭 <input type="checkbox"/> 정책출자금액의 2배 이상을 창업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투자 전 기업 가치가 500억원 이상인 중소·중견기업에 투자 * 투자전 기업가치 500억원 이상 건 투자시, 외부 전문기관의 재무실사 또는 재무자문 의무 | | | | | | | | |
| 정책출자비율 | <input type="checkbox"/> 정책출자비율 [16%] 이내로 제안 | | | | | | | | |
| 운 용 사 의무 출자비율 | <input type="checkbox"/> 약정총액의 [2%] 이상* * 운용사 계열사의 출자금액은 의무출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함 * 소속 운용인력 출자금액은 운용사 출자금액으로 인정 | | | | | | | | |
| 투자한도 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별 투자한도는 약정총액의 [20%] 이하로 제한 | | | | | | | | |
| 존속기간 | <input type="checkbox"/> 펀드 성립일로부터 10년 이내 (1년씩 2회 연장가능) | | | | | | | | |
| 투자기간 | <input type="checkbox"/> 펀드 성립일로부터 5년 이내 | | | | | | | | |
| 납입방식 |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시납(Capital call) 또는 분할납 | | | | | | | | |
| 운용보수 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모집된 출자확약서(LOC) 등 대비 운용보수가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제안 | | | | | | | | |
| 운 용 사 추 가 인센티브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인센티브 조건 충족 시 정책출자자 앞 배분될 초과수익의 5% 이내에서 기준에 따라 운용사 앞 지급 (미선택 가능) - 주목적투자분야 의무투자금액 초과 달성 실적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ad3;">의무투자금액 초과 투자실적*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ad3;">250% 이상 ~ 300% 미만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ad3;">300% 이상 ~ 350% 미만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ad3;">350% 이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ad3;">인센티브 지급비율</td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ad3;">2% 이상</td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ad3;">3% 이상</td> <td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ad3;">5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* 주목적투자분야에 대한 투자금액/의무투자금액 | 의무투자금액 초과 투자실적* | 250% 이상 ~ 300% 미만 | 300% 이상 ~ 350% 미만 | 350% 이상 | 인센티브 지급비율 | 2% 이상 | 3% 이상 | 5% |
| 의무투자금액 초과 투자실적* | 250% 이상 ~ 300% 미만 | 300% 이상 ~ 350% 미만 | 350% 이상 | | | | | | |
| 인센티브 지급비율 | 2% 이상 | 3% 이상 | 5% | | | | | | |
| 핵 심 운용인력 | <input type="checkbox"/> 핵심운용인력 총 3인 이상 참여 - 제안펀드 규모 및 운용 전략, 운용인력의 경력, 역량 및 실적 등을 감안 하여 적정 수준의 인원으로 제안 - 핵심운용인력 중 대표펀드매니저 1인 지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자격요건 - 핵심운용인력은 일정 기준 이상의 투자경력 요건*을 충족해야 함 * 핵심운용인력 관련 세부 사항은 주관기관별 제안서 엑셀 서식 '작성요령' 참조 <input type="checkbox"/> 핵심운용인력(대표펀드매니저 포함)이 투자기간 중 본건 펀드를 포함하여 핵심운용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펀드의 개수는 4개*를 초과할 수 없음 * 투자기간이 경과하였거나, 약정총액의 60% 이상 투자하고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펀드는 미포함 <input type="checkbox"/> 펀드 결성 시 핵심운용인력은 정관(규약)에 기재 | | | | | | | | |

| 항 목 | 세부내용 |
|--------------|--|
| 수탁회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금융기관 Pool에서 우선 협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펀드 최종결성시 출자자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○ 펀드자산의 관리는 수탁회사와의 업무지시서를 통해서만 가능 |
| 회 계 감 사 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회계감사인 선정 |
| 펀 드 전자보고 시스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펀드 전자보고 시스템 사용 의무 ○ 펀드운용 등에 대해 출자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고 ○ 시스템 구축 및 사용 비용은 운용사가 부담 ○ 펀드 투자실적에 대해 IGS(혁신성장 인텔리전스시스템)를 활용한 투자실적 제출 의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펀드 조성목적에 따른 투자실적 및 집계를 위한 사항으로 정관(규약)상 비밀 유지 조항의 예외사항으로 정관(규약)에 반영하며 피투자 기업의 정보 제공 동의 필요 * 제공정보: 투자기업개요(법인등록번호, 대표자명, 업종코드, 기업규모, 설립일자, 지역구분), 식별정보(구분, 식별번호, 뉴딜 품목코드, 기표일, 기표금액) |
| 기 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공고에 의해 운용사가 제안한 출자조건(출자금액, 보수, 인센티브 등)의 적용 여부는 선정 이후 최종 결정 예정 ○ 운용사는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병행펀드(Parallel 펀드) 구조로 제안 가능하며, 이 경우 병행펀드와 본건 제안펀드를 합산하여 정책출자자 출자비율 등 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부 운용조건은 병행펀드와 동일하거나 유리한 조건이어야 함 - 병행펀드의 결성일은 제안펀드의 결성일보다 늦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* 다만, 선정 후 결성과정에서 병행펀드 구조를 희망하는 경우, 세부 운용조건, 결성일 등은 공고조건 및 펀드조성 취지 범위 내에서 사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○ 투자 미집행 된 경우에 한하여 기존 결성된 펀드*(Multi-closing) 제안 허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약정총액 1,250억원 이상인 기 결성 펀드 限 - 단, 제안서 제출 전 세부내용은 사전 협의 요망 ○ 정책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정부재정 펀드(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) 출자사업에 공동 출자할 수 없으며, 세부내용은 사전 협의 요망 ○ 정책출자자의 리스크관리 목적상 펀드 투자대상(편입가능 자산 유형) 및 차입 행위 등에 대한 정관(규약)상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 ○ 책임투자(ESG, 스투어드십코드 등) 관련 운용사 내규, 구축 및 운영 현황, 도입 계획 등에 대해 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, 심사시 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경보호(E), 사회적 책임(S), 적정한 지배구조(G) 요소 등을 종합 고려 |

| 항 목 | 세부내용 |
|-----|---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미합중국의 은행지주회사법(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), 최종 시행규정(Volcker Rule Implementing Regulations) 등을 준수하여야 함 ○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모투자 일반 관행에 따르며, 결성 과정에서 주관기관과 개별 협의하여 결정함 |

2. 선정 우대 항목

- (대상)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 금액이 정책 출자금액의 400%를 초과하는 운용사
 - * 출자확약서의 유효기간이 펀드결성기한 내에 유효하여야 하며, 투자 확약서에 해당 펀드 명이 명기되고, 기관투자자 및 법인의 출자확약서에 한함.

3. 선정 배제, 취소 기준

□ 선정 배제

-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운용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, 동 사유로 펀드의 적법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제안시점 현재 법령 위반 또는 시정 명령 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
 -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 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바 있거나, 시정명령 이행 실적이 양호하지 않은 경우
- ※ 다만, 본 펀드 운용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내역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정 배제사유에서 제외 가능함
- 회사 및 펀드 운영상 도덕적 해이 또는 제3자 경유 등을 통해 사실상 법령을 위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
-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거나,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2년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위탁운용사로써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등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 으로 위탁운용사로서 독립적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제안 펀드의 핵심운용인력과 운용사 대표이사가 제안서 작성 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독 당국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

- 위탁운용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·형사상 소송의 진행, 리스크관리, 컴플라이언스 등의 위험관리체계 부재, 경영권 불안정, 운용인력의 잦은 이동 등으로 펀드의 안정적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정책출자자가 출자한 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등을 한 위탁운용사로서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고의적 누락 또는 중대한 오류 등으로 중요한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, 허위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- 공고일 이후 위탁운용사 또는 제3자가 출자자의 선정 절차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'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

□ 선정 취소

- 펀드의 목표결성금액(조정된 경우 조정 후 금액)에 미달하는 경우
- 공고문 또는 정책출자자가 제시하는 출자조건 등을 위탁운용사가 수용하지 않아 규약(정관)협의 등 후속 업무 진행이 곤란한 것으로 정책출자자가 판단하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타 출자자의 출자확약서를 제출하였으나,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
- 위탁운용사가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이거나 기타 우회적인 방법 등으로 사실상 법령 위반 상태에 있어 펀드의 성실한 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위탁운용사 선정 후 결성총회까지 선정 배제 사유 또는 당해 펀드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※ 선정 취소 발생시 원칙적으로 정책출자자간 협의에 의해 차순위 후보자와 우선협의

4. 제재 사항 및 기타

□ 제재 사항

- 결성시한(협약에 의한 연장기간 포함) 내 펀드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위탁 운용사 또는 선정이 취소된 위탁운용사에 대해서는 각각 결성시한 또는 선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를 제한할 수 있음
 - 다만, 관련 법규상 제한 등의 사유로 인해 펀드결성이 지연될 경우 제재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함
- 선정된 펀드가 존속기간 중 규약(정관)상 투자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운용사에 대해 1년 이하 출자 제한하며, 기지급된 관리보수를 환수하거나 성과보수를 미지급할 수 있음
- 선정된 운용사가 출자확약서 등의 제출에 따라 우대를 받았으나 그 사실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밝혀지는 경우 5년 이하 출자 제한되고, 실제 출자금액이 당초 제출한 출자확약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
- 출자대상 투자기구 결성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까지 최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자대상 투자기구를 해산할 수 있음
- 펀드 운용현황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며, 동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출자사업에 제안시 감점(가점)되거나, 3년의 범위 내에서 출자 제한할 수 있음

□ 기타

- 제안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의 허위사실 기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
 - 특히, 운용사 및 운용인력의 투자실적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누락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,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하며 확인일로부터 5년 이하 출자 제한함
- 제안서 작성기준일은 2023년 6월 30일로 하며, 핵심운용인력 등의 참여인력은 접수일 현재 기준으로 함
- 정부 정책 및 재정 모펀드에 대한 산업은행 내부 승인 결과 등에 따라 본 사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. 단, 변경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

5. 선정절차 및 일정

□ 선정 절차

- 공고 → 제안서 접수 → 서류심사 → 현장실사 → 구술심사 → 최종 선정

□ 선정 일정

| 일 자 | 내 용 | 비 고 |
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2023. 10. 23 | 제안서 접수 | 10:00~15:00 |
| 2023. 11월 중 | 최종 선정 | 개별 통지 |
| 2023. 11월 중 | 출자확약서 발급 | 출자자별 내부 승인절차 완료 후 |

*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6. 접수처 및 문의방법

□ 접수 및 문의방법

- 주관기관이 정하는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을 포함한 USB메모리 1개를 지정된 접수처에 접수시한 내 제출

* 제출서류 및 관련 양식은 공고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

- 구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별도 PT자료(10부)를 제출
- 분량 : 본문 기준 20페이지 이내 (발표 당일 PT자료, 파일 별도 지참)

-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반드시 아래 이메일을 통해 협의

* 문의사항 집계, FAQ 작성 등을 위해 유선 문의 최소화

| 구 분 | 대 형 |
|-------------|--|
| 주 관 기 관 | 신한자산운용 (특별자산운용팀) |
| 주 소 |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신한투자증권타워 18층 특별자산운용팀 |
| 전 화 번 호 | 02-767-9057, 3674, 3659, 9043 |
| E - M a i l | specialasset@shinhanamc.com |

2023년 10월 16일

신 한 자 산 운 용 (주)
한 국 산 업 은 행